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사업설명회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CONTENTS

I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II . 사업 수행 세부절차

III . 사업신청 관련



CONTENTS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II. 사업 수행 세부절차

III. 사업신청 관련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사업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노후화된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지원 대상

구분	지원자격
신청기업	국내에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임대공장의 경우 본 사업기간 내(사후관리 기간 포함) 정상 운영 가능 여부 증빙자료 필요)

CO₂ 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배출

사업모델 부재



노후화 공장



친환경 공장

환경오염 최소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모델 구축

지원 형태

신청기업



컨설팅 기관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관련 기술적/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규모



지원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2026년도 75개사 내외 선정 예정

구분	20년 ~ 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규모	99개 (988억원)	93개 (874억원)	98개 (903억원)	95개 (795억원)

사업비 구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신청기업 유형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지원 기간



협약일 ~ 2026.11.30.(2026.12.31.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지원분야)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폐기물
배출 저감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타시설



지원분야	시설분야
온실가스 저감	연· 원료 전환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회수·절감, 탄소포집·저장·활용 시설, 건축물에너지 절감, 오염방지시설 에너지 절감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대기오염 저감	대기오염방지(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수질오염 저감	수질오염방지(오·폐수를 정화·재이용하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비점오염 저감(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
폐기물배출 저감	폐기물 저감(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는 시설), 유해원료 사용절감(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
환경보건	악취저감(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소음·진동 저감(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 환경안전(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 총사업비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시설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 총사업비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필수 분야(온실가스 저감)를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 분야를 제시하여야 함.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 구축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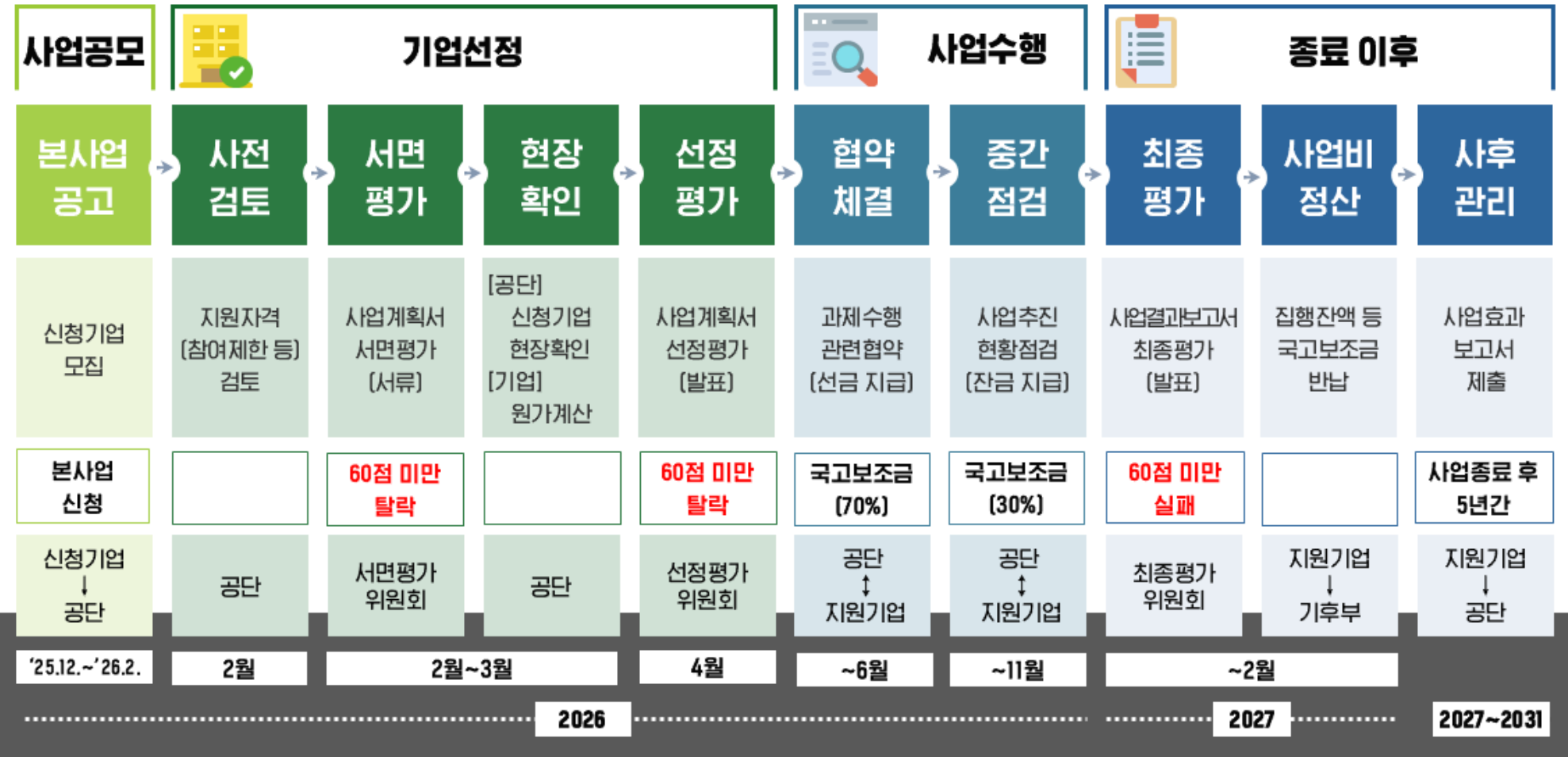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III. 사업신청 관련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사업공모)

사업 공모

한국환경공단



공고기간

- [공고] 2025.12.19. ~ 2026.02.06.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 - 공지사항 확인]
- [접수] 2026.01.12. ~ 2026.02.06.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bojo.go.kr - 공지사항 확인]

신청방법

-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신청
- e-나라도움(www.bojo.go.kr)

※ 사업계획서(한글, 엑셀) 및 관리지침 등 사업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사업신청을 위해 수행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기업선정)

사전 검토

한국환경공단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현장 조사

한국환경공단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확정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총 사업비 검토

자격요건 검토

신청자격 제한대상 여부 검토

부적합

적합

탈락
조치

서면
평가

사업목적 부합성 (40점)

사업 적정성, 기업역량 (25점)

사업예산 합리성 (15점)

효과성 (20점)

60점 미만

60점 이상

탈락
조치

현장
조사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예비설명(자료배포 등)
(원가계산서 준비 등)



설비 설치장소 방문
(공장등록증 기준)



사업계획 (30점)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점)

시설의 유지관리 (20점)

기대효과 (10점)

60점 미만

60점 이상

탈락
조치

지원대상
/후보

최종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년도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후보 분류



※ 평가위원회 점수는 **과제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세부 평가기준은 추후 공고 시 공개되는 지침 참조)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 기한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 서면평가통과 과제 수는 **2026년 사업 물량의 1.5배수 범위에서 선정 예정**

※ 서면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가감점 적용

Ⅱ 사업 수행 세부 절차 (사업수행)

사업 수행

한국환경공단, 지원기업



협약체결

-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예산범위 안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약** 체결
- 사업계획서 및 필요 서류가 **구비완료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협약 진행

사업수행

- **협약 체결 후** e나라도움 상 사업 내용 입력 및 e나라도움 및 나라장터를 통한 시설·장비 등의 발주 및 계약 실시 등 **실제 사업 수행**
- **관리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 등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진도율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등 실시

Ⅱ 사업 수행 세부 절차 (종료이후)

종료 이후

한국환경공단, 지원기업



사업종료

- 반드시 **협약기간 내(~2026.11.30.)**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완료 및 시운전**, 사업비 **집행 완료**
- 사업종료일 이후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정산 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필요

최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 실시
-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성공', 60점 미만일 경우 '실패'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종료이후)

종료 이후

한국환경공단, 지원기업



사후관리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하여 설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 [기간] 사업종료 이후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실시
- [방법] 사후관리 수행 다음연도의 3월말까지 **사업효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기존의 설치 및 운영 내용이 변경 될 경우 공단의 승인(필요시 심의) 후 실시

사업수행	사후관리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2026.11.30.	2027 ~ 2031	2028 ~ 2032



CONTENTS

I.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개요

II. 사업 수행 세부 절차

III. 사업신청 관련



III 사업신청 관련(참여제한 기준)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제한

-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3 휴·폐업 중인 경우
- 4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5 「보조금법」을 위반하여수행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7 최근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2023년, 2024년)
- 8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9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0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11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12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14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에 한함)
- 15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III 사업신청 관련(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상효과는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예상효과에 대한 증빙자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첨부 필요
- 2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면에 동시 날인한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 3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 납세증명서의 경우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4 과년도 양식 사용 금지



제출서류 목록 (20개)

구분	목록	세부 내용		
공 단 양 식	1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2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3	필수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별첨 1]
	4	필수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별첨 2]
	5	필수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별첨 3]
	6	필수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 계획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별첨 4] 및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
	7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작 성 서 류	8	필수	사업자등록증	본점과 지점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제출
	9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10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중앙 날인 필수
	12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3년, 24년 재무제표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13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구분	목록	세부 내용		
구 비 서 류	14	필수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조업 증빙 서류	실제설비가 설치 및 운영 예정인 공장의 등록증명서를 제출 임대공장은 협약 및 시추관리기간이 포함된 임대기간이 확인 가능한 계약서 등 포함
	15	해당시	가점 현황 증빙자료	사업 관리지침 [별표 4] 참고 ※ 해당시 제출
	16	필수	시설의 주요 구성 자료 (개략도 등)	
	17	필수	설비의 사양과 약 자료	※ 카탈로그 등
18	필수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유형자산 및 건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제출 필요 ※ 환경전문공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각각 시공관련면허(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가 필요한 공사인 경우 관련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자가 발급한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업등록증 첨부	
19	필수	환경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0	필수	기업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서류 1.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실적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 등록번호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업종		
	사업장 주소 (우:00000)					
	수행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지원받은 년도(해당시)						
건설영기관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전문분야		
	기관 주소 (우:00000)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주소						
위와 같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법인인감 찍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 부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부.						

사업신청서



서류 양식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양식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작성 방법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날짜 :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의 날짜로 기입
- 수행책임자 및 담당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신청기업의 담당자 기입
- 컨설팅 기관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둬(칸 삭제 등 양식변경 불가)

유의사항

- ◆ 공단 누리집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에 첨부된 양식 사용

제출서류 2. - 사업계획서

<p>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p>	
신청기업	
20 . . .	

사업계획서



서류 양식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호서식] 양식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작성 방법

- 분야: 필수분야(온실가스 저감)를 포함한 최소 2개 분야를 선정
- 총사업비: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비율 (중소기업의 경우 6:4, 중견기업의 경우 5:5) 고려하여 작성
- 사업의 목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전·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도록 공인측정기관의 측정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

유의사항

- ◆ 공단 누리집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 에 첨부된 양식 사용

제출서류 4. -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별첨2]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기업명		수행책임자
<p>「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적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p>		
20...년 월 일		
지원기업 :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서류 양식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호서식 별첨 2] 양식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작성 방법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수행책임자 : 사업계획서의 수행책임자와 동일
- 날짜 :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의 날짜로 기입

유의사항

- ◆ 공단 누리집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에 첨부된 양식 사용

제출서류 6. - 안전보건 계획서

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

주식회사 000

안전보건 계획서



서류 양식

자사양식 사용

작성 방법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 자사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PDF)

제출서류 7.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스마트 생태공공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① 스마트 생태공공 구축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명보(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점명, 학과, 학위),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
 - 선택항목: 주소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질적 필요,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①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물을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 ② 제공된 날로부터 전문위원 임기(2년)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스마트 생태공공 구축사업 신청 및 전문위원 구성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탁기관(○○○○이 지점)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스마트 생태공공 구축사업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명보(기관명, 부서, 직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질적 필요,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__년__월__일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류 양식

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양식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작성 방법

- 날짜: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의 날짜로 기입
- 소속: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작성
- 서명: 수행책임자 날인 필요



제출서류 8.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명(단체명) : []
대표자 : []

영업업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본점소재지 : []

사업의종류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서비스업
 도소매 재생원료 무역업
 도매

발급사유 : 정경

전화 : []
팩스 : []
e-mail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

2017년 06월 09일
진주세무서장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홈텍스(www.hometax.go.kr) 참고

유의사항

- ◆ 본점과 지점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제출
-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설비설치장소 주소가 같아야 함
 ※ 상이할 경우 해당 장소가 해당기업 소유의 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제출서류 9.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input type="text"/>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상 호	<input type="text"/>				
본 점	<input type="text"/>		2011.10.31 도로 일수소		
			2013.07.17 등기		
공고방법	<input type="text"/>				
1주의 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08.07.23 변경 2008.07.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년 결 연 결 일 등 기 일 월 일		
			2016.03.31 변경 2016.04.01 등기		
주 기					
일련에 관한 사항					

[일련에 관한] 도시 직할지, 시·군·구, 읍·면·동, 산지, 임야, 임야등기소(http://www.iros.go.kr)에 부속확인 제능에서 부속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해·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일련일부에서 3개월까지 3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발행연도 # 11010400225010001210021006251104000001CE3K10C1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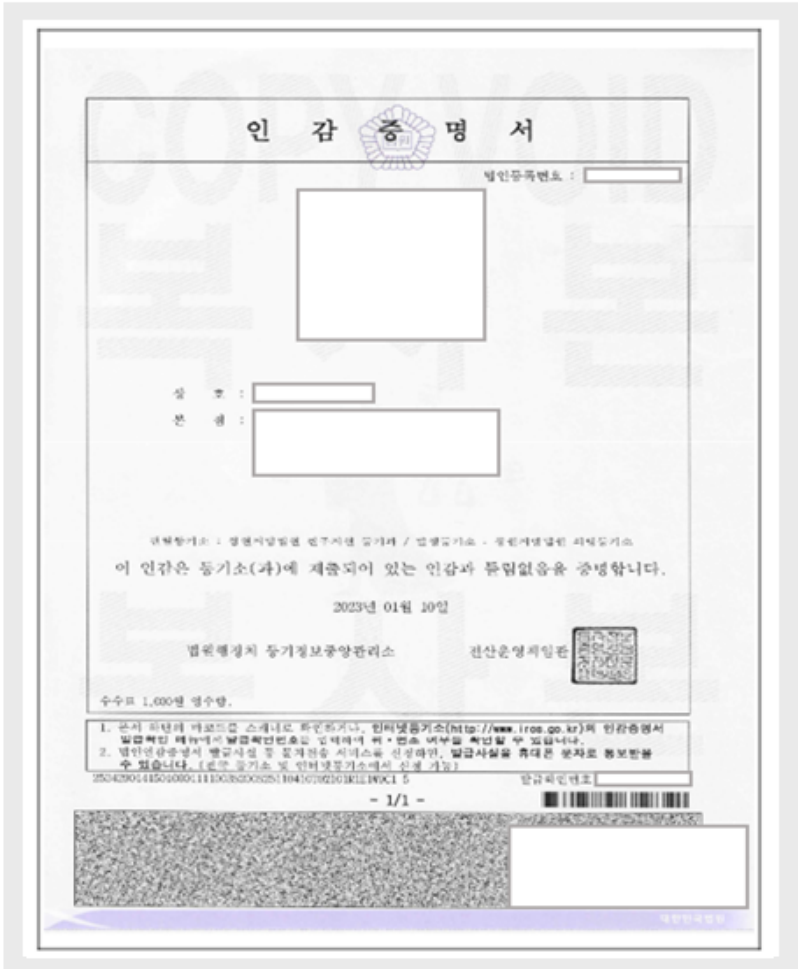
법인등기부등본



발 급 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참고

유의사항 ◆ 사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10.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참고

유의사항

- ◆ 사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11. -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문서확인번호 :  페이지 1.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1/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발급일자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영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Mobile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input type="checkbox"/> 출국신고 Emigration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상속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전달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대과 지급지 Copy	세무서장 신고일 Date of the Report	년 월 일 yyyy-mm-dd

증명서 전달부수 필요 (필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Mandatory)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신청인(납세자) 2023년(yyyy) 02월(mm) 22일(dd)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납입유형 Type of taxes suspended	납입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y fee
- 해당 사항 없음(None) -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 2023년(yyyy) 03월(mm) 24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경상남도 진주시장
THE MAYOR OF JINJU 2023년(yyyy) 02월(mm) 22일(dd)

본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발급되었으며, 광문(www.gov.kr)에 전자발급공유서인쇄확인 버튼을 통해 복-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공유서 05페이지) 또한 공시 확인에 어려우므로 전자확인(인무)에 할 모든 스크린샷을 문서확인 프로그램(공공)을 필수로 하십시오.

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zpdfwebviewer/viewerGov24&optN

지방세납입증명서



발급처

정부24(www.gov.kr)참고

유의사항

- ◆ 사업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 ※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중앙 날인** 필수

제출서류 12.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5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단위: 원)

과목	제15(2021)기		제14(2020)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자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예금				
계좌입금				
신입금				
신입금				
신입금				
신입금				
(2) 채권자산				
상대방채권				
채권				
채권				
채권				
채권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기투자자산				
당사채권				
외국채권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비				
구입자산				
관공구				
기계장비				
기계장비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비				
기계장비				
(3) 무형자산				
회계				
(4) 기타비유동자산				
외국채권				
기타비유동자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참고

유의사항

◆ 23년, 24년 재무제표 제출

제출서류 13.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사실 및 발급번호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변경,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기업 정보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기한의 지정투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정부24 (www.gov.kr)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유의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제출서류 15. - 가점 현황 증빙(해당시)

[별표 4]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항 목	가 점	비 고
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증빙제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 수준을 평가받은 기업(최근 3년 이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3	증빙제출
③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	1	증빙제출
④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1	증빙제출
⑤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⑥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1	증빙제출
⑦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	1	증빙제출
⑧ [기후에너지환경부]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은 기업(최근 3년 이내) - 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	3	증빙제출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

* 가점은 중소기업 가점(①항) 3점과 나머지 항목(②항~⑧항)의 합계(최대 5점)로 총 8점까지만 부여

2. 감점

항 목	감 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5점

가점 현황 증빙



참고사항

사업 관리지침 [별표 4]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유의사항

- ◆ 해당하는 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 제출 시,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순번과 서류명을 파일명으로 기입.

제출서류 16, 17. - 설비의 주요 구성 자료 및 설비의 사양파악 자료

설비의 주요 구성 자료 및 설비의 사양파악 자료



제출서류

카드로그 등 레이아웃, 공정도, 개략도 등 시설의 주요 구성 및 사양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유의사항

설치하려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레이아웃 및 공정도 등의 자료와 사양서 제출 필요

제출서류 18. -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견 적 서

2023 . 02 . 10 .

귀중

귀사의 필 일 제 호 요청에 의하여 하기와 같이 견적을 제출합니다.

총 액 : 일 금 ₩210,000,000 원장(VAT별도) 영 업 소 :

납 기 : 도면승인후(120)일 인도장소 : 귀사공장온반설치도

지불조건 : 계약금 (30)% 중도금 ()% 잔금 (70)% 현금결제 유효기간 : (30)일한

구분	품 명	기 종	수량	단 가	금 액
1			1대		210,000,000
	1) MAIN BODY		1식	198,842,000	
	2) MAIN BODY PART		소계	11,158,000	
			1식	3,787,000	
			1SET	350,000	
			1식	1,848,000	
			1식	5,173,000	
	합 계		1대	210,000,000	
			합 계		210,000,000

사업비사용계획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서류

본 견적 1개, 비교견적 2개 이상 제출

※ 본견적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의미함

유의사항

- ◆ 해당 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필수**
 - ※ 1천만원 이상의 설비만 해당
 - ※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사업비 사용계획은 공급가액으로 작성
 - ※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19. - 환경법적기준 준수 증빙서류

환경법적기준 준수 증빙서류



제출서류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측정기록부, 지도점검결과 등 최근 6개월간 환경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자료
 ※ 불인정 서류: 설치허가증, 설치신고증명서 등

유의사항


공인인증기관명, 시료채취일, 측정일, 측정항목, 측정분석방법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자체측정하여 제출하거나,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불인정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증빙서류를 제출

[별첨 표 21호서식]

대기 측정기록부					
①	상호(기관명)		②	시 설 별	말가려처리시설 외 7
①	소재지(주소)		②	일	종 별 4
①	대표자(의결인)	대 표 이 사	②	면	종
①	환경기술인		②	주	생 산 별 구조재 부종
①	측정 용도	자가측정용			
①	측정의 명칭 (측정지점)	중수에 의한 시험 80#/분-1 (연 도 측 정 공)			
①	의뢰 항목	HF 외 1 항목			
④	현장기상	기 온	습 도	기 압	풍 량
④	시료	14 ℃	39 %	770.0 mmHg	평균 풍 0.0 m/s
④	배출가스	배출가스 유량		산소농도	
④	취역자 의견	63.33 S#/분		20.9 %	기 타
④	제출일자	2023년 2월 8 일		시료채취자	
⑤	측정항목	관련기준	측정분석값	측정시간 (환경상태 포함)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HF	2 ppm	불검출		유형 2111, 141
	NO	2 #/S#	0.015		유형 2111, 141
	배출가스속도	- m/sec	9.94		유형 2111, 141
	배출가스온도	- ℃	15		유형 2111, 141
	수 분 량	- %	10.87		유형 2111, 141
분석기간	2023년 2월 8 - 2023년 2월 13		분석책임자		
④	중항의견	배출허용기준이내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2023년 2월 14 일					
상 호		:			
소재지 및 연락처		:			
대표자 성명		:			

제출서류 20. - 기업신용평가등급표


일련번호 :
교부번호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무결산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한
제출처 및 용도

기업신용평가등급




상기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임

유의사항

- 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등급 제공업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확인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당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기업 재무의태능률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 본 확인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평가 대상이 유효기간 내에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평가절차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조달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입찰 및 상거래 신용도 확인에 활용되며, 그 활용에 따른 탄압이나 갈등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확인서에 대한 확인 및 문의는 SCI평가정보(주)(Tel. 02-614-3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I평가정보 주식회사



Copyright©2019. SCI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 reserved.
여기있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SCI평가정보(주)의 소유입니다. 적지시 어떤 정보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식으로도 복제 목적을 위해서 무단 전제되거나 복사 또는 재판매, 유통될 수 없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표



발급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유의사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표

※ 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함.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CONTENTS

I. 협약체결 구비서류

II. 원가계산서 양식

III. 기타 참고사항



01 협약의 중지 및 해약 사유

아래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지원대상 제한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0조(신청자격의 제한)

-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3 휴·폐업 중인 경우
 - 4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5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7 최근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8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9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0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12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소속 사업장인 경우
 -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 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14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에 한함)
 - 15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
 -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 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 ※ 모든 제한사항은 사업공고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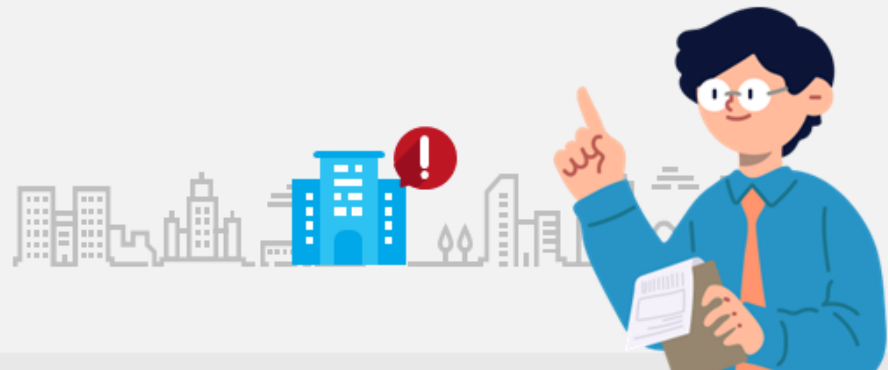


01 협약의 중지 및 해약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약 가능** ⋮⋮

20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2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법 및 관련 법령, 관리지침 및 공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4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국고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8 보조사업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 10 보안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 11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지원기업이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함을 숨긴 사실이 적발되거나 선정된 이후 신청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3 관리지침 제23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 14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15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은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16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한 경우



01 협약의 중지 및 해약 사유

공모신청 목록 ●신청 ○자격적합 ○예비선정(임시) ○선정(임시) ○제출실패 ○선정사업 ○탈락(임시)

※선정 시 보조사업유형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사업기본정보 탭에서 수정 가능)
 ※예비선정(임시) 혹은 선정(임시)을 하고 [임시저장]한 경우, 상단의 확정버튼(예비선정확정 혹은 선정기안)을
 필수 누르셔야 최종 반영(선정상태 확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시고,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액셀

□	순번	신청명	신청일자	신청자정보(대표담당자)					공모진행								
				보조사업자	담당자	연락처	보조사업 유형	진행상태	자격검증 진행상태	중복수급 진행상태	수행배제 진행상태	자격적합 여부	중복수급 결과	수행배제 검토결과	공모심의	임시상태	선정
									경보수...	검토대상	수신완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경보수...	검토대상	수신완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경보수...	검토대상	수신완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경보수...	검토대상	수신완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검증완료	검토완료	검증완료	적합	적합	적합	해당없음	선정(임시)	선정

공모신청 사업정보

신청자구분	법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자명	신청자번호
사업명(신청)	2024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일자
사업내용	- (온실가스 저감) - (ICT) - (대기오염 저감) - (수질오염 저감)		
사업목적내용	-		

중복검토대상 사업목록 ①

중복수급여부저장

중복수급 여부	업무상태	사업연도	공모명	사업명	보조사업기간	국고보조금액
□	수행중	2021			2021-06-29~2021-11-30	43,416,000

02 e나라도움 시스템 (1)

“e나라도움시스템”이란?

국고보조금 사용 **전과정을 통한 관리**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가 운영**하는 시스템

수행 역할



보조사업 수행 역할에 따라
상위보조사업자(공단), 보조사업자(기업) 구분

한국환경공단

상위보조사업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관리하는 역할

지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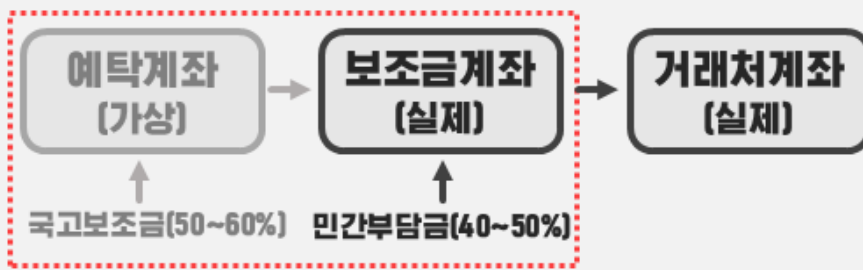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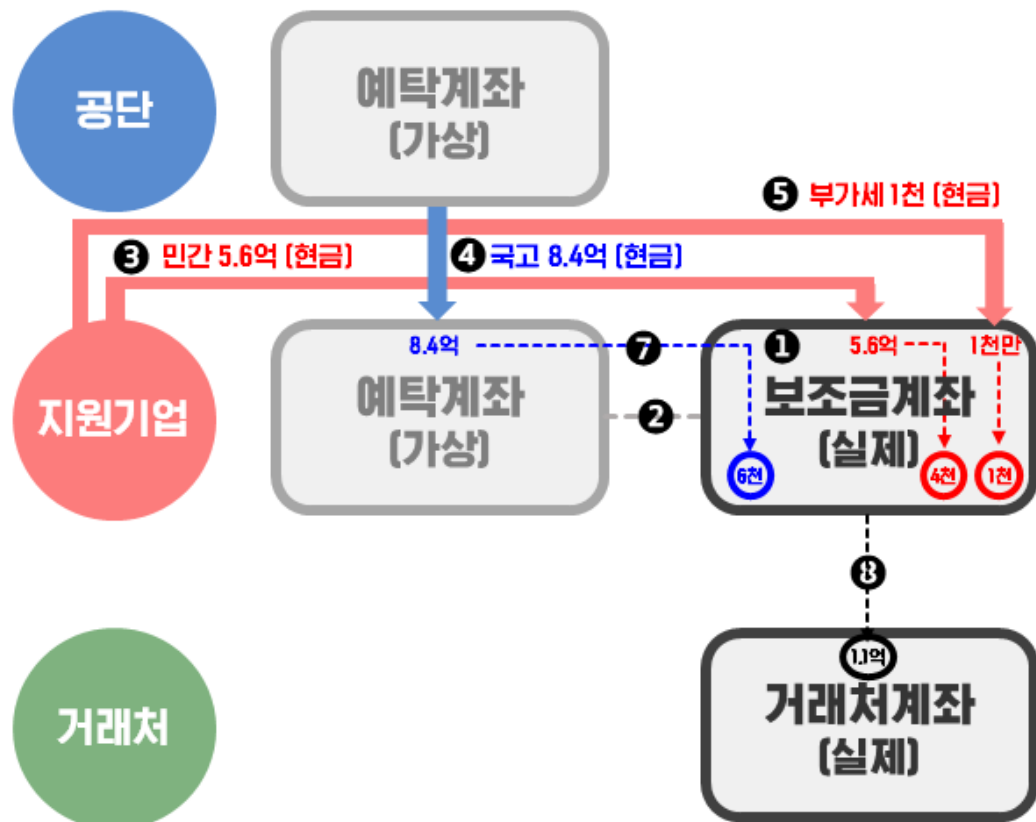
예치형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예탁계좌에서 보조금계좌를 거쳐 거래처로 입금



※ 시스템에 지원기업 실제계좌를 등록, 이와 연동된 가상계좌 생성

02 e나라도움 시스템 (2)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4억인 사업의 현금 집행 흐름(예시)



부가세 지급이 안내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정산 불인정

100% (총사업비)	
14억	
8.4억	5.6억
60% (국고)	40% (민간)

- 1 지원기업 : 보조금계좌 신규 개설,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
- 2 시스템 : 보조금계좌와 연결된 예탁계좌 자동 생성
- 3 지원기업 : 민간(현금) 5.6억 입금
- 4 공단 : 국고(현금) 8.4억 교부 (선금/잔금)

[지원기업이 거래처로부터 1.1억원의 물품 구매]

- 5 지원기업 : 부가세 1천 보조금계좌로 별도 입금
- 6 지원기업 : e나라도움 집행등록(공급가액 1억, 부가세 1천), 이체
- 7 시스템 : 예탁계좌에서 국고 6천(공급가액 1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금계좌로 입금
- 8 시스템 : 보조금계좌에서 총 1.1억원(국고 6천, 민간 4천 (공급가액 1억원의 40%), 부가세 1천)이 거래처계좌로 입금

02 e나라도움 시스템 (3)

화면경로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 등록 > 일반집행(증빙우선)

집행정산

교부이체관리 >

집행관리 >

- 집행현황
 - > 집행현황조회
 - > 3대재정 교부내역조회
- 집행관리
 -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 > 계좌거래내역조회요청
 - > 집행정보 등록**
 - > 보조금 집행(이체)
 - >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 집행요청정보 일괄등록

집행액

일반집행(증빙우선)

과세어부 과세정보가 없거나 기관의 과세어부가 다른 경우 "기관사업책임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통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공통코드'기관정보관리(e나라도움) > 기관정보 검색]

* 과세어부 - 과세(일반과세자): 매입부가세액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연세(간이과세자 포함): 매입부가세액을 보조금으로 집행가능

사용정보 > < 이전 > 다음 > 집행현황조회 | 이전 페이지 > 초기화 | 재사용입력 | 저장 | 삭제

집행번호:

개별첨부파일: 개별파일첨부 | 공통첨부파일 | 공통파일첨부 | 중요계산정보: 예 아니오 | 중요재산정보등록

증빙정보

증빙선택: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 작성일자: 2021-11-30 | 증빙사용액(B): |

승인번호: | 승인액(A): | 증빙가능액(A-B): |

보조세목 정보: 금액 입력 후 영수가 클릭 | 직접입력 | 자동계산 | 원단위 | 십원단위 | 설정저장 | 재입력거부

보조비목세목	종목	집행액(A=B+C)	부가세액(B)	공급가액(C)	등록가능액	이체가능액
문명비-일반수용비	국고보조금			6천만원		
	민간부담금		1천만원	4천만원		
	합계	1억1천만원	1천만원	1억원		

* [인력등록] 버튼을 집행정보등록(저장)버튼 클릭)후 비록재입력 정보 선택시 활성화 됩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면 인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기록용 보조비목: 내용(과기과사-지방보조, 지차단행정사-지방보조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방보조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집행 세목으로 변경 후 집행 가능)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외자부담에 입력된 금액은 거래처로 이체될때 별도의 자부담 금액으로 함께 이체처리 됩니다.

사업비외자부담: 1천만원

비록 재입력 정보: 그룹접기 | 그룹펴기 | 형식제

선택	보조비목세목	재원구분	종목	집행액	부가세액	공급가액	지급대상 인력정보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메뉴는 상이하게 보입니다.

집행등록 전 부가세 1천만원을 "보조금계좌"에 별도 입금해두어야 함

02 e나라도움 시스템 (4)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월별 업무 흐름도



년	월	상위보조사업자 [기후부]	보조&상위보조사업자 [공단]	보조사업자 [지원기업]	비고
2026	1~2	① 보조사업자지정(지정형) ③ 사업등록접수/확정	② 사업등록 ① 공모등록 ③ 선정 통보 ⑥ 추가정보검토, 사업 확정	② 공모사업 신청 ④ 선정 후 추가정보 입력 ⑤ 사업등록 제출	→ 추가정보 입력 주요 내용 [보조금 계좌, 세부추진계획 등]
	5~6	→ 사업 이전	② 교부신청접수/결정 ③ 교부집행등록/이체	① 교부신청 ④ 교부금액 확인	
2027	7~11	→ 사업 진행중	④ 집행내역검토(상사검검)	① 이체인증서,OTP 등록 ② 집행등록 ③ 보조금집행(이체) ⑤ 상시점검 결과 보완	→ 현금 : 집행등록 후 거래처 대금집행 - 이체증빙(3) : 세금계산서 / 카드 / 기타 - 이체구분(2) : 거래처계좌 / 보조금계좌
	12~4	→ 사업 이후	② 집행내역 검토/보완요청 ④ 검토완료 ⑤ 정산완료 ⑦ 정산보고서검토/확정	① 집행마감(사업종료) ③ 보완결과등록 ⑥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⑧ 반납등록(불인정금액 등) ⑨ 반납(한국재정정보원계좌) ① 정보공시	→ 집행마감 시 집행등록/이체 불가 → 정산보고서와 함께 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후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납 → 회계감사보고서 준비 - 26년도 보조금 10억원 이상(타사업 포함)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Yes

거래처계좌로 이체
예탁계좌 → 보조금계좌 → 거래처계좌

보조금 계좌를 통해 거래처 계좌로 바로 입금

No

보조금계좌로 이체
예탁계좌 → 보조금계좌

보조금계좌로만 이체됨(직접 거래처로 입금 필요)

02 e나라도움 시스템 (5)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 (e나라도움 문의처 : 1670-9595)

Quick menu ▶ 공모신청 사업등록 교부신청 집행등록 이세 정보공시 **매뉴얼** 업무명 용어사전 메뉴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e나라도움 대민홈페이지 보조사업관리 사업수행관리 집행정산 부정수급관리 공통관리 정보공개 업무포털 교육신청 마이페이지

사용자매뉴얼 목록(보조사업자-전체) - e나라도움 - Chrome
gosims.go.kr/hf/hf005/retrieveManualPopList.do

◇ 사용자 매뉴얼 업무포털 >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구분: 보조사업자 - 업무명: 전체 [검색]

- 상세업무명

전체 **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업무대행자

- 전체
- 공모신청
- 집행관리
- 중요자산관리
- 회원가입
- 사업등록 및 변경
- 정산관리(예치형)
- 정보공시
- 소속기관 등록 및 권한관리
- 교부신청
- 정산관리(비예치형)
- 기타
- 평생징, 인증서 및 OTP등록
- 계약관리
- 보증금 반납
- 교육고제

번호	사용자구분	업무명	상세업무명	현행화일자	다운로드	동영상	조회수
83	보조사업자	기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통합본 (보조사업자) (분할압축 4번)	2024-05-17	↓ 다운로드		7792
82	보조사업자	기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통합본 (보조사업자) (분할압축 3번)	2024-05-17	↓ 다운로드		7454
81	보조사업자	기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통합본 (보조사업자) (분할압축 2번)	2024-05-17	↓ 다운로드		9882
80	보조사업자	기타	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통합본 (보조사업자) (분할압축 1번)	2024-05-17	↓ 다운로드		39825
79	보조사업자	계약관리	G2B계약건 계약변경 확인 방법	2024-05-16	↓ 다운로드		2288
78	보조사업자	계약관리	G2B계약(대지급) 처리방법	2024-05-16	↓ 다운로드		6521

2023년도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쉬백 지급 안내 2024.05.09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2024.05.09

온라인교육 및 교육신청 (02-6312-8404)

03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계약관련 주요용어

- 계약형태** : 일정금액 이상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필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
- 계약방식** :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시 수의계약 가능)

1 계약형태	자체계약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거래처와 자체적으로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G2B 계약	나라장터를 통하여 거래처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자체조달 ¹⁾ , 중앙조달 ²⁾)
2 계약방식	경쟁입찰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수의계약	상대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며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는 방식

1) 자체조달: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 체결 2) 중앙조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나라장터 계약 체결

“나라장터(G2B)” 계약 대상 금액

구분	금액 기준	조달방식	
물품, 용역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자체/중앙	
공사	종합공사	• 「건설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중앙
		• 「건설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
	전문공사	• 「건설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중앙
		• 「건설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
	기타	• 그 밖의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중앙
		• 그 밖의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 등

03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2)

건설업종별 분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모든 **관련 법령**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거래처의 업종 등)

구분	종류
건설공사	<p>종합공사 (5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 조경공사업
	<p>전문공사 (15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③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⑦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⑧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⑨ 철도·궤도공사업 ⑩ 철강구조물공사업 ⑪ 수중·준설공사업 ⑫ 승강기·삭도공사업 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⑭ 가스·난방공사업 ⑮ 시설물유지관리업
기타공사	<p>전기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p>정보통신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의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

명시된 공사 외에도 그밖의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가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3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3)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 다운로드 방법 (나라장터 문의처 : 1588-0800)



○ 종합등록가이드

- 사용자등록분야: 조달업체 | 수요기관 | 민간수요자 | 비축업체
- 상품 등록분야: 종합쇼핑몰 | 우수제품 | 벤처나라
- 기타 등록분야: 물품식별번호(품목품명) | G-PASS기업

○ <수요기관 등록>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보조금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 위탁대행 법인

○ 등록절차 [상세절차다운로드](#) →



○ 관련규정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 (중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비고
사업추진 과정	월간보고 제출	▶ 계획한 추진 일정대비 공정률, 사업비 집행률 등 월간 수행내역 의 경우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전월 보고서는 익월 10일 까지)	<div style="border: 2px dashed red; padding: 5px;"> 협약기간내 미완료 성과분석 미비 ↓ 최종평가 "실패" ↓ 참여제한(최대 3년) 사업비 환수 </div>
	협약기간 [~11.30]	▶ 협약기간은 연장 불가 하며 해당 기한 내 사업비 집행,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사업효과(성과) 분석까지 모두 완료 하여야 함	
	성과목표 검증	▶ 당초 제시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KOLAS 인증기관 및 공공기관 (KTL, KTR 등) 공인 시험성적서 로 검증 및 확인 필수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시공 후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와 비교하여 미설치된 내역 은 성과 달성과 상관없이 감액처리	
사업비 집행	자금집행 흐름	▶ 본 사업은 예치형 국고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을 통해 집행건별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등록 후 이체가 가능	<div style="border: 2px dashed red; padding: 5px;"> 적법증빙 미첨부 계약법령 미준수 ↓ 부정수급자 "확정" ↓ 국고 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 징수 </div>
	적법증빙 첨부	▶ 세금계산서, 보조금 카드(실제 사용 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계약법령 준수	▶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용역, 공사의 경우 자체계약은 불가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G2B계약(누리장터 X) 형식으로 진행 필요	

※ 상기사항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중요) 부정수급 관리 철저

"국고보조금, 제대로 잘 쓰었나"...중기부, 내달 '칼' 뻐다

점검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실태, 중요재산 관리 실태 등이다.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점검도 나선다. 중진공, 기보, 여...



작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유령회사, 친인척 관계 이용"

A 박은수 기자 | © 입력 2025.03.19 11:00 | 댓글 0



"5년간 39억 원 몰아준 수의계약 등 친인척 거래 다수 '라벨 같이'로 새 장비 구매 위장하기도
최대규모 적발... 정부 "점검 대상 1만 건 이상 확대할 것"

최신뉴스

· 미중 "무역협상 진전"...12일 공동성명 발표예정

세계일보 PICK · 2025.03.20. · 네이버뉴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적발 외 [한강로 경제브리핑]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



경제

출장비 뺑뺑이에 지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류영욱 기자 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3-20 07:03:59



작년 부정수급 630건 '최다'
국민 혈세 500억 가까이 골격
"기관장·직원 연루사례 많아"

유령회사에 용역, 인건비 이중계산... 국고보조금 493억 줄줄 썼다

중앙일보 | 입력 2025.03.20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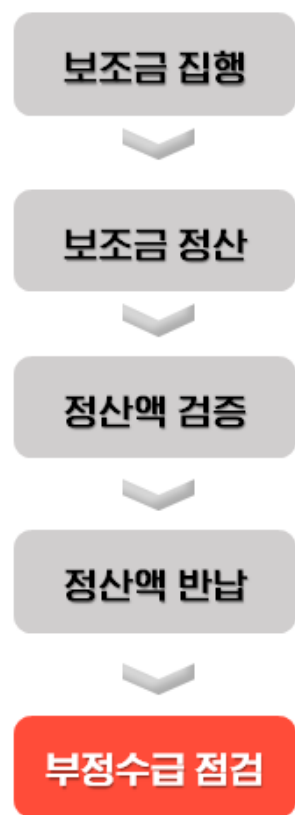
지면보기 ①

임성빈 기자 구독

국고보조금을 받는 A기업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B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단속을 피하려고 이미 계약하고 두 달이 지난 뒤 공공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비를 B사에 몰아줬는데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39억1000만원에 달했다.

★ 부정수급 관리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2022.3) ... 부정수급 적발 및 부정수급자 확정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2022. 3.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1. 제재부가금

- (부과·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 §33조의2, 시행령 §14조의2)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법33조2 1항1호 사유 해당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보조금 반환 간접보조사업자 (법33조2 1항1호 사유 해당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 반환 보조금 수령자 (법33조2 1항2호 사유 해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정수급 관리 (2)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 ①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③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④ 해당 **사업기한종료 후** 집행한 경우
- ⑤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⑥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법·지침에 따른 적격·법적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⑦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⑧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 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⑨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⑩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⑪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별표 2(사업비의 관리 기준)

부정징후 탐지패턴

구분	부정징후 유형
가족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가족기업과 거래 • 대표자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지출증빙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취소
집행 오·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거래처 분할 결제 •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 심야시간 보조금카드 사용 • 누적 집행실적 저조(기간대비) • 보조금 사용 금지업종 거래
특정거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거래처 분리 계산서 발행 • 거래처 1곳과 복수의 수의계약 • 특정 거래처 편중 거래 • 신생기업 거래(사업일 이후 설립) • 보조사업자 실소유 거래처 거래
학습통계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증빙 집행 증빙 미비

★ 부정수급 관리 (3)

사업비 불인정 기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관리지침 별표2)

- 1 사업비 계좌에서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 해당 **사업기간 이전 및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4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경우
- 6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8 협약의 **해약 통지**를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9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의 사업비 집행
- 10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동일법인내 사업장간**에 이루어진 사업비 집행
- 11 수행기관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한 경우
- 12 **물품구매·계약 또는 공사·시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3 동일거래처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정산 결과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불인정 예시

변경내용	승인주체
→ 사업목표, 주요내용 변경	전담기관의 장 (위원회심의) ※기후부보고
→ 비목간 20% 이상 예산변경	
→ 수행책임자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
→ 건당 1천만원(사업계획서 계상액) 이상의 사업비를 사용계획과 다르게 신규 및 증·감하여 집행	
→ 설비의 사양, 장소 등 설비 설치 계획의 변경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문서 접수 전 집행사항은 불인정 대상임.

★ 부정수급 관리 (4)

부정수급 의심패턴 발생 주요 사유 ... **동일 거래처** 분리 계산서 발행, 거래처 1곳과 **복수의 수의계약** 등

방지대책 : 계약 방법 및 내용(물품/공사)과 상관 없이 **동일 기업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은 1건으로 진행!!**

AS-IS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분리 발주)

비목	세목	세부내역	금액	거래처
건설비	시설비	A(물품/용역)	19,000,000	코리아산업
		B(물품/용역)	19,000,000	코리아산업
		C(전문공사)	90,000,000	에프엔피
		D(전문공사)	90,000,000	에프엔피
		소계	378,000,000	

! 부정수급 의심

A (19,000,000원) 자체 계약(수의)
D (19,000,000원) 자체 계약(수의)
C (90,000,000원) 자체 계약(수의)
D (90,000,000원) 자체 계약(수의)

To-Be (거래처 기준으로 통합 발주)

비목	세목	세부내역	금액	거래처
건설비	시설비	A(물품/용역)	19,000,000	코리아산업
		B(물품/용역)	19,000,000	코리아산업
		C(전문공사)	90,000,000	에프엔피
		D(전문공사)	90,000,000	에프엔피
		소계	218,000,000	

A+B (38,000,000원) 나라장터 계약(경쟁)
C+D (180,000,000원) 나라장터 계약(수의)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부정수급 방지 Point

- 첫째, 동일 거래처와 분리계약 No → 사업계획서 상 항목이 나뉘더라도 **하나의 계약 진행**
- 둘째, 총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반드시 이용 필요**
- 셋째,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의계약 진행**

Q&A

